

#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0,428,449	19,512,853
일반회계	639,334,532	19,180,036
특별회계	11,093,917	332,818
기타특별회계	11,093,917	332,818
건축진흥특별회계	89,900	2,69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54,278	22,628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41,474	37,244
드림빌특별회계	439,976	13,19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55,566	7,667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92,400	2,77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04,658	12,1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03,635	141,109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1,030	1,531
장성군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3,061,000	91,83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7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